

제 265 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2.8.26.)

#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민섭]



# 목 차

1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7
3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7
5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59



#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8.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8. 16.

### 2. 제안이유

-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문을 모두 명시함(안 제1조)
- 나.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을 정함(안 제2조)
- 다. 조례로 위임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을 정함(안 제3조~제7조)
  - 1)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간사, 운영세칙
  - 2) 법령 규정: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운영, 제척·기피·회피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7. 8.~7. 2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를 모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⑧항에 근거하여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적극행정 위원회의 운영을 분명히 정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7.>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27.]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06

라. 위원회 규정방식

### 1) 위원회의 설치

~법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재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가 되는 것임에도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가 되는 것임에도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법령에서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두도록 한다.

## □ 현행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거창군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8.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8. 16.

### 2. 폐지이유

- 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90. 7. 11.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나. 제정 당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 다. 1999. 1. 29.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개정으로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여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 조례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졌으며, 또한 지방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7. 12.~7. 29.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로 바뀌어
  
-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의 법률상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조례 위임 근거 법령 연혁

□ 「지방공기업법」

[시행 1980. 1. 4.]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地下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하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방공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6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2조(법의 적용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계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직원수가 30인 이상이거나 1일생산능력이 1만톤이상인 상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0·5·8>

**제2조(법의 적용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계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직원수가 30인 이상이거나 1일생산능력이 1만톤이상인 상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0·5·8>

+-----+-----+		
사 업 명	기 준	
	직 원 수	사 업 규 모
+-----+-----+		
상 수 도 사 업	50인 이상	1일생산능력2만톤이상
공업용수도사업	30인 이상	1일생산능력2만톤이상
케 도 사 업	100인 이상	보유차량 50량이상
자동차운송사업	100인 이상	보유차량 50량이상
가 스 사 업	30인 이상	공급건수 1만건이상
+-----+-----+		
지방도로사업	10인이상	도로관리연장 100킬로미터이상
하수도사업	30인이상	하수처리장시설구비
청소위생사업	10인이상	1일 분뇨 또는 진개수거량 300톤 이상
주택사업	10인이상	주택관리연면적 100,000평방미터 이상
의료사업	20인이상	병상수 20개 이상
매장 및 묘지등 사업	10인이상	연간 매화장 2,000건 이상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경영하는 다음의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 할 수 있다.

1.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포함한다.)

2. 도축장사업

3.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4. 통운(도선)사업

5. 중기관리사업

6. 관광사업

7. 계량기검정사업

8. 체육장사업

9.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을 포함한다)

10. 공원사업

11.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그 경비를 주로 사업경영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각호에 계기된 사업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거나 미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된 날 또는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법을 적용하거나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호에 계기된 사업으로서 그 조례로 정한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거나 미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법을 적용하거나 법의 적용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980·5·8>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던 사업으로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뜻을 조례로 정하고 법의 적용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 [위임근거 삭제]

### □ 「지방공기업법」

[시행 1999. 4. 1.] [법률 제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의료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1. 29.]

## ↓ [현행]

###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49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 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2021. 10. 19.>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현행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 제정) 1990.07.11 조례 제11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상 사업의 기준

사업명	구분	기준	
		직원수	사업 규모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 포함)		5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도축장사업		5인 이상	1일평균도축수 소4두, 돼지 50두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 개발사업		10인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통운(도선)사업		10인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톤수 100톤 이상
중기관리사업		10인 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계량기 검정사업		5인 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 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포함)		10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연조성사업		10인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건설자재 생산사업(석재개발포함)		5인 이상	1일평균생산능력 2천평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사업(창고 시설 포함)		5인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주차장사업		5인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통합공과금사업		10인 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 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		3인 이상	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8.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8. 16.

## 2. 제안이유

- 현재 공설공원묘지 내에 화장 유골은 봉안당에만 안치 가능하나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 유골을 봉안뿐 아니라 매장하여 평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함에 따라 이용 가능장사시설을 “평장”을 포함하는 “분묘”로 개정하고 분묘의 형태 등 수시로 변경 가능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설공원묘지 이용 가능한 분묘 형태 확대함(안 별표 1)
  - 1) (현행) 봉분, 월평공설공원묘지만 평장 가능  
⇒ (변경) 봉분, 모든 공설공원묘지 평장 가능
  - 2) 봉분, 평장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인 “분묘”로 용어정비

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등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5조제3항)

- 1)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를 열거할 것을 권고함
- 2)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 모두 기재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지방자치법」 제16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7. 1.~7.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화장 유골을 봉안당에만 안치하는 제약을 두지 않고 매장하여 평장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 장사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장례 문화의 변화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임

-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 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20.6.)에 따라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를 열거하여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면 거부 등의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

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5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8. 2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 7.>

###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 1. 공설묘지

-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평분(平墳) 또는 평장(平葬)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공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라.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바.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 공설화장시설

- 가.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 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설봉안시설

### 가. 공설봉안묘

- 1) 공설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공설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설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

능하여야 한다.

-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봉안당

- 1)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 2)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설자연장지

- 가. 공설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라.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 가. 공설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라.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바.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

여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7호, 2022. 5. 9., 일부개정]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20.6.)**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I. 정비필요성**

##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2. 정비필요성

- (감면 거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
  - ⇒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부처 간 협업) 지자체 운영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치법규 규정 정비에 관한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 II. 법령 상 요금감면 대상 및 범위

### 1 관련 법령(상세는 첨부자료 참조)

-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위 8개 법령에서 감면대상 시설·요금 및 감면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 방식도 유사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 ~ 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기타법령	의사상자법	○ 의사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사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의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열거할 것을 권고함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8.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8. 16.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①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 건립)

#### 1. 제안이유

-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사업내용 : 농공단지내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 건립 1식
- 사업위치 :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내(남상면 대산리 2376번지)
- 사업기간 : 2022. 6. ~ 2025. 6.(3년)
- 총사업비 : 5,560,000천원(국비 3,890,000, 군비 1,670,000)
- 대지면적 : 4,237㎡(건축면적 783㎡ / 연면적 1,364㎡ / 지상3층)
- 공간구성 : 1층(복합문화), 2층(혁신지원), 3층(기숙사)

구분		기 능	비고
3층	기숙사	기숙사(7실), 휴게실	
2층	혁신지원센터	기술지원사무실, 기업인 커뮤니티공간, 무인 카페 등	
1층	복합문화센터	기업컨퍼런스 룸, 헬스룸, GX룸, 세탁방 카페, 편의점 등	
옥외	주차장, 광장	옥외주차장, 야외광장 등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 ○ 토지 취득 사항

(단위:㎡,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예상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237.3	307,204			
취득	토지	남상면 대산리 2376	대	4,237.3	307,204 (72,500원)	2022	복합문화센터 건립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

※ 매입가격은 거창승강기농공단지 분양가격에 따름(분양가 112,000원/㎡)

#### 다. 추진경과

- 2022. 5. 11. : 공모사업 선정
- 2022. 6. 16. : 업무협약 체결(거창군⇔한국산업단지공단)
- 2022. 7. 7. : 국비 사업비 교부(2022년 : 930,000천원)
- 2022. 8. ~ 12. : 군비 확보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라. 향후계획

- 2022. 9. ~ 10. : 토지보상(예정)
- 2022. 11. ~ 2023.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3. 7. ~ 2025. 6. :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 공사 시행

#### 마. 기대효과

- 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혁신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체 전문성 강화 및 신규 근로자의 유입으로 농공단지의 활력 부여 마중물 역할
- 근로자 수요에 맞는 복지·문화시설의 조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구인 시 긍정 효과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동법 규칙 제7조
- 「2022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가이드 라인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조 감 도

###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8억 9,000만 원, 군비 16억 7,000만 원으로 총 55억 6,000천 만 원을 투자하여 남상면 대산리 2376번지(승강기 전문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음
- 본 사업 시행으로 인근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 근로자 유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검토되었음
-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숙사 적정 규모와 목적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 ② 가북 용산숲 주차장 조성 사업

### 1. 제안이유

- 가북 용산숲은 균유림이고 개인의 무단 점유 등 불법사항으로 군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숲에 대한 지속적 관리부재와 용산숲 내 차량 주차 등으로 숲이 훼손되어 별도 주차장 조성 필요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가북면 용산리 378-1 등 3필지
- 사 업 비 : 930,000천원(토지보상 및 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22. 9. ~ 2023. 3.
- 대지면적 : 3,211m<sup>2</sup>
- 사업내용 : 주차장 80면, 공중화장실 1개소, 기타 부대시설 등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m<sup>2</sup>,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재산소유자	용도지역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공시지가(원/m <sup>2</sup> )				
계				3,211	3,211		41,406			
취득	토지	가북면 용산리 378-1	대	1,061	1,061	19,000	20,159	2022	(유)거창행복****센터	보전관리지역
취득	토지	가북면 용산리 378-2	천	492	492	1,400	688	2022	(유)거창행복****센터	보전관리지역
취득	토지	가북면 용산리 378-3	답	1,658	1,658	12,400	20,559	2022	김**	보전관리지역

#### 다. 추진경과

- 2021. 11. : 소나무 보식으로 마을 숲 확장

- 2021. 12. : 가북 용산숲 돌수로 조성 완료
- 2022. 1. ~ 6. : 토지 소유자 면담 및 매입 등 협의
- 라. 향후계획
- 2022. 9.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
- 2022. 10. : 토지보상 및 등기 완료
- 2022. 9. ~ 10. :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2022. 10. ~ 2023. 3. : 주차장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
- 2023. 3. : 가북 용산숲 주차장 준공식

마. 기대효과

- 주차장 조성을 통해 가북 용산숲의 생태적 건강한 숲 유지와 순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유서 깊은 산림자원의 가치 활용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가북면 용산교 인근 용산숲 맞은편 위치(가북면 용산리 378-1 등 3필지)



○ 지적도 : 가북면 용산리 378-1 등 3필지 지적도



○ 전경사진 : 가북면 용산리 378-3번지(답) 일원 전경



○ 전경사진 : 가북면 용산리 378-2번지(천) 일원 전경

### 3.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본 계획안은 용산숲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숲 내로 차량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 수백 년 수령의 천연 소나무자원을 배기가스로부터 보호하고 방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③ 도시재생 빈집활용 등 프로젝트

#### 1. 제안이유

- '20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만당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마을상상호텔 만당」 주변 유희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도시재생 시설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읍 중앙리 388-23번지 등 3필지
- 사 업 비 : 400,000천원(2022년 2차추경예산 400,000)
- 취득면적 : 285㎡(토지편입면적)
- 용도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내용 : 빈집 등 매입 후 문화쉼터, 주민공동체 공간조성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합 계			334,000			
취득	건물	중앙리 388-21	건물	26.45	100,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목조
취득	토지	중앙리 388-23	대	183	88,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취득	건물	중앙리 388-23	건물	16.53	34,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목조
취득	토지	중앙리 388-11	대	102	48,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취득	건물	중앙리 388-11	건물	48.6	64,000	2022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조적조

#### 다. 향후계획

- 2022. 8. ~ : 대상지 감정평가
- 2022. 9. ~ : 보상협의
- 2023. 12. ~ :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

#### 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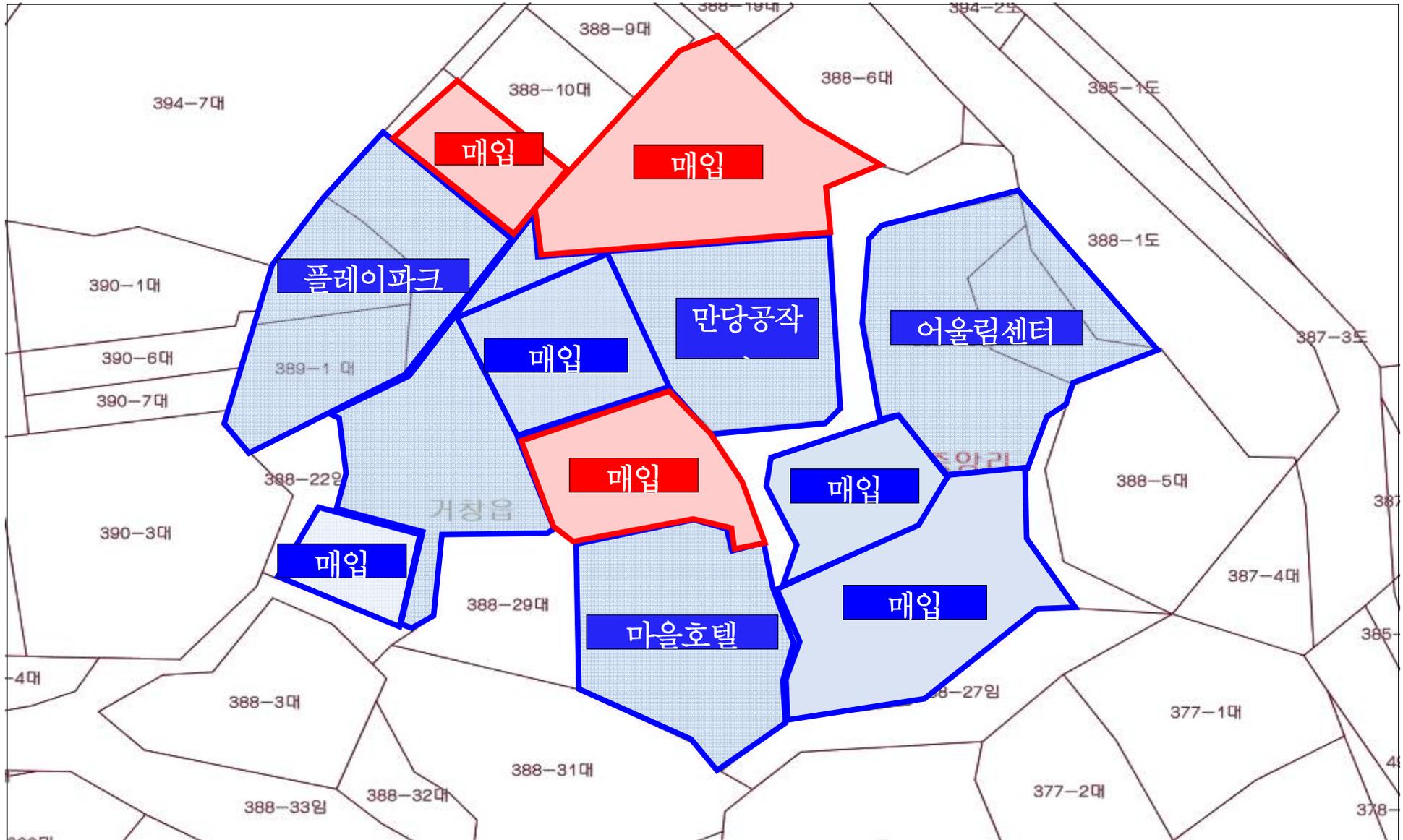
- 도시재생 단위사업 간 연결성을 확보하여 주민공동체 활동 활성화
- 유희 균유지의 환경정비를 통한 우범지역 해소 및 도시경관 개선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 매입 대상지 지적도



□ 매입 대상지 위치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거창읍 중앙리 388-21번지

위 치 도	지 적 도

## 현 장 사 진



□ 거창읍 중앙리 388-23번지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 거창읍 중앙리 388-11번지



현 장 사 진



### 3. 검토의견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등 5년간('19~'23)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 거창군은 2020년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만당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마을 상상호텔 등을 조성 중
- 해당 토지는 만당공작소와 마을호텔 사이의 토지로서 도시재생 시설 간의 연결성 확보와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④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부지매입

##### 1. 제안이유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관외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필요
-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지원 및 법률·근로·생활전반 관리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2024. 12.
- 소요예산 : 1,000,000천원 정도
- 소요내역 : 거창읍 대평리 1497-3 / 962.7㎡(대)
- 현소유자 : 거창축산업협동조합

###### 나. 취득 재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공시지가 총계	용도지역	감정평가 (원)	감정평가액
소계			962.7					903,367
1	거창읍 대평리 1497-3	대	962.7	518,100	498,774	제2종 일반주거	809,333	779,145
2	거창읍 대평리 1497-3	지장물	-	-	-	건물등 지장물		124,222

###### 다. 추진경과

- 토지 소유자 거창축협으로 매도 의사확인 : 2022. 1. 19
- 감정평가 의뢰 2개업체 : 2022. 1. 19
- 주민추천 감정평가 의뢰 : 2022. 1. 26
-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확정 : 2022. 2. 23.

-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도 농업정책과-4995호) : 2022. 4. 1.
-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부지 매입 동의서 제출(거창축협) : 2022. 5. 12

라.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후 제2회 추경으로 예산확보후 매입 예정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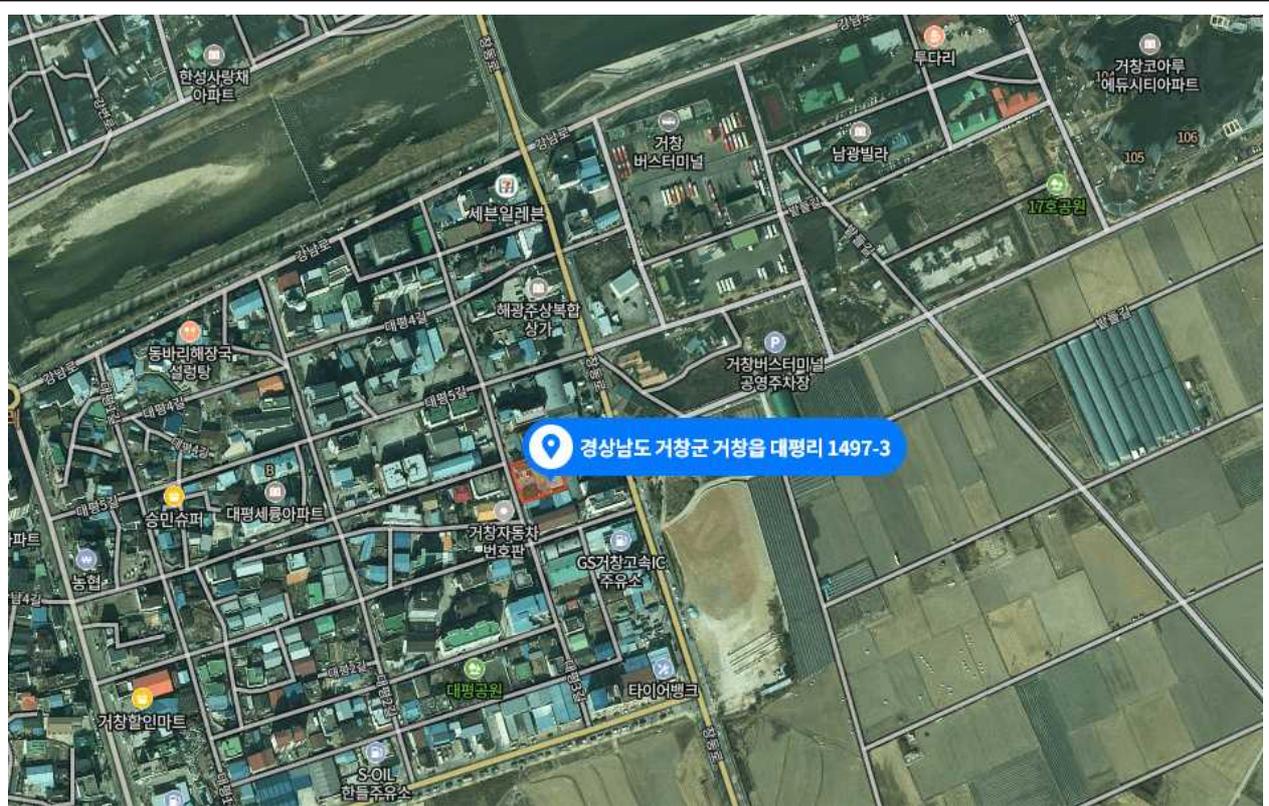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 및 관외 농업인력 주거지 해결로 부족한 농촌일손의 안정적 공급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항
-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책무)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전 경 도

### 3. 검토의견

- 2019년 12월 기준 거창군 농업에 관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실적은 31,119명임, 그 중, 사과·양파·딸기 작목에 26,709명(73명/1일)을 고용하였고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창군의 현실상 관외 주민과 외국인 농촌 일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 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촌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5억 중 7억 5천만 원을 국비 확보하였으며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부족한 농촌일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 파견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농식품부 기준에 맞게 신축할 필요가 있음

## 5 가조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사업

### 1. 제안이유

- 기 조성된 가조 파크골프장(9홀)과 연계하여 정규 1라운딩 18홀 규격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22 등 4필지
- 취득면적 : 9,140㎡
- 사업내용 : 파크골프장 9홀 A=15,222㎡ (사유지 9,140㎡, 도로점용 6,082㎡)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2년간)
- 사업비 : 1,900,000천원 정도
- 주요기능 :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부지로 활용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계				9,140	186,890			
취득	토지	가조면 일부리 1022	답	2,660	53,466	2023	가조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	
		가조면 일부리 1022-1	답	1,135	25,991			
		가조면 일부리 1019	답	3,968	79,756			
		가조면 일부리 1028	답	1,377	27,677			

\* 기준가격은 최근 공시지가 기준가격임(본 감정평가 시 변동 가능성 있음)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변경 필요
  - 군 계획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반영 추진 중

#### 다. 추진경과

- 2021. 3. : 가조파크골프장 추가조성 타당성 조상 및 기본 계획 용역 수립
- 2021. 6. : 도로점용허가 / 3필지 6,082.12㎡ / 2021. 6. 21. ~ 2031. 6. 20 (10년)
- 2022. 5. : 거창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반영 (주민공청회)

#### 라. 향후계획

- 2022. 8. :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수행
- 2023. 5. : 편입부지 보상 협의
- 2023. 6. : 실시계획 용역
- 2023. 10. : 군 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24. 1. : 사업 착공
- 2024. 12. : 사업 완료

#### 마. 기대효과

- 정규 1라운딩 18홀 구성으로 각종 대회 유치 및 여가생활 환경 조성
- 가조 힐링랜드, 온천과 연계한 체육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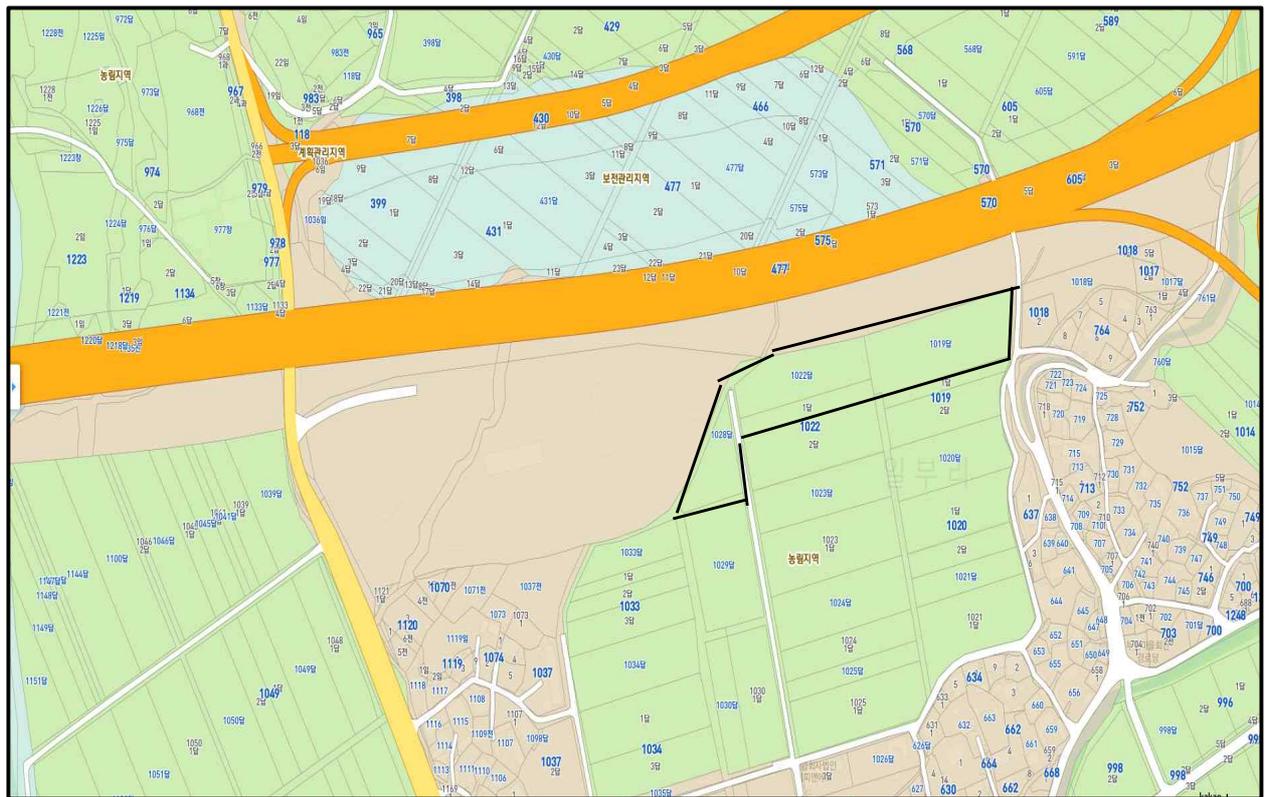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 3.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음
- 본 사업은 이미 조성된 가조 파크골프장(9홀)과 연계하여 추가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정규 1라운드 18홀 규격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 본 사업을 통해 군민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각종 대회와

체육관광객 유치에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파크골프는 국내에서 출범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가장 인기 있는 생활체육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보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 지역 주민의 복지 및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가조면 일부리 1022번지 일원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어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인근에 농지와 주택이 밀집해 있으므로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시 농약 살포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지역 내 학생들에게 파크골프 수업 시간을 두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8.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8. 16.

### 2. 제안이유

- 거창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이 민간위탁계약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거창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다. 시설물 현황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140.55㎡	12개	7,829㎡



라.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바. 수탁자격 :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

## 4.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군민여가 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 (관리위탁)

### 다. 추진일정

-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2022년 10월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2022년 12월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12월
- 위탁계약 체결 : 2022년 12월
- 위탁계약 운영 : 2023년 1월

마.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 민간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안건이 제출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에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다면 테니스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있어 유익하고 거창군 테니스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거창군 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위탁기간 만료(2022. 12. 31.) 예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 I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4조

## II 추진배경

- 위·수탁기관 만료 : 2022. 12. 31.
-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거창군 테니스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리상 공공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 I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
- 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 능력 고려
- 공정한 심사를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결정

## IV

## 위탁개요

### 위탁대상 시설현황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시설물 현황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140.55m <sup>2</sup>	12개	7,829m <sup>2</sup>

### 현 위탁체 현황

수탁자	주소	기간	비고
거창군 테니스협회	-	2020.01.01. ~ 2022.12.31. (3년)	

- 위탁 및 사용료 : 위탁료 1,119천원 / 사용료 3,178천원(년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료 원가산정(2020)에 따라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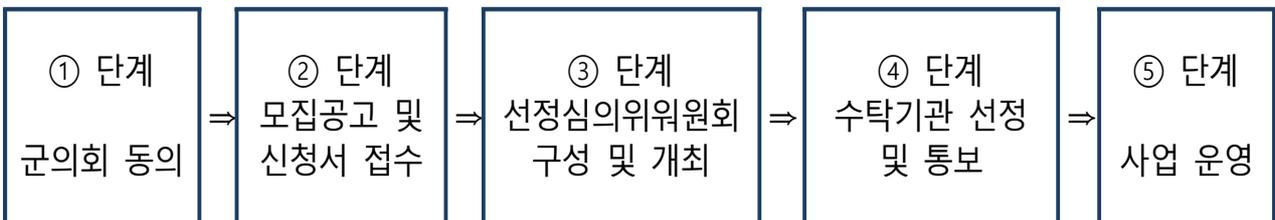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 위탁기간 : 2023. 1. 1.~ 2025.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 추진절차



## V

### 세부추진계획

####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자치사무에 대한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2. 10월

####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12. 1. ~ 12. 15.(15일간)
- 접수기간 : 2022. 12. 1. ~ 12. 10.(10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도내 일간신문 등
- 공고내용 : 대상시설, 위탁기간, 신청자격, 구비서류, 선정방법 등
- 신청자격
  - 생활체육 지도자 3급(경기지도자 3급이상, 유사자격증)이상 소지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도민체육대회에 우리군 대표 선수단으로 출전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 및 체육 단체, 개인
- 위탁사무 : 테니스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지명
-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12월 중
- 장 소 : 체육시설사업소 회의실
- 심의위원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 심의방법 : 서류심사, 사업계획 설명(PPT), 질의응답

○ 심사기준

항목(5개부분)	점수(100점)	심사내용(16개항목)
1. 사업계획 적정성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발전방향 - 운영 및 관리계획의 합리성
2. 재정운영 계획	10	- 수지분석, 수입증대 방안 등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방안 등
3. 조직 및 인력운영	25	- 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 - 시설관리 능력 확보 및 운영
4. 시설운영 활성화	20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타 기관 시설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대회 및 행사 등 기회운영 능력
5. 이용자 안전관리	10	- 이용자 안전대책 및 방지 방안 등
6. 지역사회와의 협력	20	- 지역사회 교류 및 공헌 방안 -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7. 위탁자 보유자산	5	- 운영비 담보 능력 등

○ 선정방법

-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자의 PPT설명을 듣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들이 심사
-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결정
- 최초 공고 후,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또는 심사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위탁계약 체결 : 2022. 12월 중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계약방법 :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 VI 행정사항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2. 10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2월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별도계획 수립) : 2022. 12월

##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수익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대부료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조전부개정 2018.10.31.)

##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 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단체 및 개인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
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